

2020년 11월 2일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원산지관리과 과 장 서영주(054-429-4151), 사무관 박상우(4155) / 제공일: 10월 30일(총 4매)

걱정없이 농사짓고 안심하고 소비하는 나라

농관원! 재사용 화환 표시제 특별 단속 실시

- 화환제작업체, 예식·장례식장 등 12월 31일까지 점검 -

《 주 요 내 용 》

◆ ‘재사용 화환 표시제’ 시행(‘20.8.21.)에 따라 투명한 화환 유통 문화를 확립하고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유도

○ 점검기간: ‘20.11.1.~12.31.(2개월)

○ 점검대상: 화환제작업체, 통신판매업체, 예식·장례식장 등

○ 단속인원: 392개반 784명

* 특사경 142개반 285명 / 명예감시원 250개반 499명

○ 점검내용: 재사용 화환 유통·보관, 사용 화환 수거 실태, 화훼류 원산지 표시 등

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(원장 노수현, 이하 농관원)은 투명한 화환 유통문화를 확립하고, 재사용 화환 표시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재사용 화환 표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.

○ 이번 단속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화훼 생산농가 및 화환 제작업체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시기에 재사용한 화환을 표시 없이 유통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▲ 재사용 화환 유통·보관 ▲ 사용 화환 수거 실태 ▲ 화훼류 원산지 표시 등을 집중 점검한다.

- 점검대상은 위반 개연성이 높은 **화환업체***를 중심으로 일제 점검하고, 특별사법경찰관 및 생산자·소비자단체 명예감시원 등 총 784명을 투입하여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한다.

* 화환업체: 화환제조 · 판매업소, 꽃 도 · 소매상(회원) 등

- 아울러, 사이버단속반 75명*을 활용하여 화환 통신판매업체를 수시 모니터링 후, 화환이 지나치게 낮은 가격에 판매되는 의심품은 수거와 재사용 여부까지 확인할 계획이다.

* 특사경 38명, 원산지 표시 단속보조원 19, 명예감시원 18

□ **재사용 화환 표시제**는 「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(“화훼산업법”)」 제정(19.8.20. 공포)에 따라 올해 8월 21일부터 본격 시행되었다.

- (표시 사항·방법) 재사용 화환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 또는 보관·진열할 경우, “재사용 화환”이란 표시와 함께 판매자 등의 상호 및 전화번호를 화환의 앞면에 표시*하여야 한다.

* 리본 부착 유무와 리본 폭에 따라 “재사용화환” 표시(20~70포인트 이상), 그 외(판매자 상호 및 전화번호) 표시(10~40포인트 이상)

- 또한, 사이버몰(on-line mall)에서 재사용 화환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이버몰에도 “재사용 화환”임을 표시*하여야 한다.

* 화환의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 옆이나 아래에 같은 크기, 다른 색깔로 표시

< 재사용 화환 표시 사항 및 표시 방법 >

재사용 화환	
☑ 판매자의 상호	0000
전화번호	000-000-000
☑ 제작 또는 보관·진열하는 자의 상호	0000
전화번호	000-000-000

* 리본을 부착할 경우, 리본 왼쪽 상단에 표시

○ (과태료 부과) 표시 사항과 표시 방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1회 300만 원, 2회 600만 원, 3회 이상 1,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.

□ 농관원은 지난 8월 21일 재사용 화환 표시제가 시행된 이후 72일 동안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특별사법경찰관과 명예감시원을 활용하여 전국 약 2만 여개의 꽃 도·소매 업체 등에 재사용 화환 표시사항과 표시방법 등을 집중적으로 계도·홍보하였다.

○ 또한, 전국에 소재하고 있는 농관원 지원·사무소에서 오는 12월 1일부터 화훼 생산자와 전문가 등을 농산물 명예감시원으로 위촉하여 조사 전문성을 높여나갈 예정이다.

□ 농관원 서영주 원산지관리과장은 “공정한 화환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점점을 강화하여 국내 화훼생산 농업인을 보호하고, 소비자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지속적으로 재사용 화환 표시제 홍보와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”라고 하였다.

○ 아울러, 소비자들도 새꽃(신화환 등) 화환을 구입하여 국내 화훼 생산농가 소득에 보탬을 주시고, 미표시된 재사용 화환을 발견할 경우 전화(1588-8112번) 또는 농관원 누리집(www.naqs.go.kr)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.



표시사항

1. 리본을 부착하는 경우

- 위치 :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리본 **앞면의 왼쪽 상단**에 표시
- 글자 크기

리본 크기	리본의 폭이 12cm 이상인 경우	리본의 폭이 7cm이상 12cm 미만인 경우	리본의 폭이 7cm미만인 경우
(1) “재사용 화환”표시	50포인트 이상	40포인트 이상	20포인트 이상
(2) 그 외 내용 표시	25포인트 이상	20포인트 이상	10포인트 이상

- 글자색 : 리본의 **바탕색과 다른 색깔**로 선명하게 표시
- 리본에 지워지지 않는 잉크를 사용해 직접 인쇄하여 표기하되, 직접 인쇄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각인(새김도장)·소인(열에 달구어 찍는 도장) 등을 사용하여 표시

2. 리본을 부착하지 않는 경우

-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**화환 앞면의 상단이나 하단**에 풋말을 고정하거나 스티커를 붙여 표시
- 풋말, 스티커 크기 : 가로 20cm 이상 × 세로 15cm 이상
- 글자색 : 풋말 또는 스티커의 **바탕색과 다른 색깔**로 선명하게 표시
- 글자 크기 : “재사용 화환”표시는 **70포인트** 이상, 그 밖의 내용은 **40포인트** 이상

3. 사이버물(온라인물)으로 판매하는 경우

- 화환에 표시하는 것과는 별도로, **화환의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 옆이나 아래**에 ‘재사용 화환’이라고 표시
- 화환의 **제품명 또는 가격표시와 같은 크기의 글자**로 표시하되,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와 **다른 색깔**로 쉽게 알아볼 수 있는 **선명한 색**으로 표시



위반시 과태료(표시의무자)

위반 행위	1회 위반	2회 위반	3회 이상 위반
미표시 / 표시방법 위반 / 거짓표시 또는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/ 재사용 화환 표시를 손상·변경	300만원	600만원	1,000만원